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현숙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1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05. 29.

발 의 자 : 이현숙의원(1명)

찬 성 자 : 장옥준·김안숙·최원준·
박미효·박지남·김정우·
김성주·허은의원(8명)

1. 제안이유

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권역별로 확대됨에 따라 권역별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권역별 시설의 명칭 및 위치 규정(안 제2조)

나. 각 시설장 명칭 명시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5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불필요

다.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“(설치 및 명칭)”을“(시설명칭 및 위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본원과 분원으로 나누어 운영”을 “권역별로 설치·운영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권역별로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으며 1호에 4호를 포함한다.

1. 잠원·반포권역 :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(잠원로8길 38)
2. 서초권역 :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(서운로26길 3)
3. 방배권역 :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(방배로10길 10-20)
4. 양재·내곡권역 :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심리상담소(염곡말길 9)

제4조제1항 중 “대표를”을 “대표 또는 센터장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대표는”을 각각 “대표 또는 센터장은”으로, 같은 항 중 “대표가”를 “대표 또는 센터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설치 및 명칭) ① (생략)</p> <p>② 서울특별시 서초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설치하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지역적인 균형과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기능강화,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본원과 분원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〈신설〉</p>	<p>제2조(시설명칭 및 위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권역별로 설치·운영----- -----.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권역별로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으며 1호에 4호를 포함한다.</p> <p>1. 잠원·반포권역 :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(잠원로8길 38)</p> <p>2. 서초권역 :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(서운로26길 3)</p> <p>3. 방배권역 :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(방배로10길 10-20)</p> <p>4. 양재·내곡권역 :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심리상담소(염곡말길 9)</p>

제4조(조직) ① 서초여성가족플라
자에는 대표를 두어야 하며, 해당
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
수 있다.

② 대표는 구청장이 임면하며, 직
원은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 중
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·
채용한다.

③ 제28조에 따라 위탁하여 관
리·운영할 경우 대표는 구청장의
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의 대표가
임면하고, 직원은 수탁자가 채용
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조직) ① -----
---- 대표 또는 센터장 ----

-----.

② 대표 또는 센터장 ----

-----.

③ -----
----- 대표 또는 센터장 ----
----- 대표 또는
센터장 ----
-----.